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전 문 위 원 고 일 준

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2008년 5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행정심판·행정처분과 도정 주요정책 결정 시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함으로써 도민의 권익보호 및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도정배심원단 심의 대상(안 제3조)

- 도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결정, 도정 주요 시책·사업 결정
- 행정심판, 행정처분

나. 도정배심원단 운영 및 의견 반영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- 주소지가 충청북도인 만19세 이상인 자로 500여명 규모의 도정예비배심원 위촉
- 사안별 도정배심원단 구성(5~30명) 및 의견 반영

다. 심의결과 보안(안 제9조)

- 도정배심원단의 심의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
- 도정배심원단 심의결과 공개 원칙

4. 검토의견

도정배심원제는 주민참여형 행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주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, 우리도가 1)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제도라 하겠음.

특히, 공공요금(버스·택시요금 등)의 결정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, 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결정과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등 도정 전반에 폭넓게 도입되어 모범적으로 운영될 경우,

도정의 신뢰성 및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, 최근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갈등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,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는 이견이 없음.

다만, 일부 조문의 경우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거나, 운영부서의 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, 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자구 수정

- 0) 경북도가 행정처분에 한해 도민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있으나, 공공요금의 결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도정 주요사업·시책 결정과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등 도정 전반에 도입하는 것은 우리도가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음.

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가.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불확정 개념이 포함된 조문의 경우

○ 안 제3조 제3항(도정배심원제 적용 예외)의 제2호

- “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”

<수정 검토안>

⇒ “천재지변의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, 대정부 건의·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”

나. 운영부서의 장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한 경우

○ 안 제6조 제1항(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)

- “도정배심원단 운영은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.”

<수정 검토안>

⇒ “도정배심원단 운영은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”

다. 기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경우

; 붙임 자구 수정안 대비표 참조

붙임 1. 자구 수정안 대비표

2.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.

자구 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도정배심위원단의 심의 대상) ③ (생략) 1. (생략) 2. <u>도정배심위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</u> 3~5. (생략)</p> <p>제4조(도정예비배심위원 선정 등) ① <u>도정예비배심위원단은 충청북도에</u> 500여명 규모로 위촉하되, 시군별 인원은 별도로 정한다.</p> <p>제5조(사안별 도정배심위원단 구성) ① <u>운영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</u> <u>도정배심위원단을</u> ② <u>도정배심위원단은 사안의 경중 등을</u> </p>	<p>제3조(도정배심위원단의 심의 대상) ③ (원안과 같음) 1. (원안과 같음) 2. <u>천재지변의 복구, 법정전염병 방제</u> <u>대정부 건의·의견 제출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)</u> 3~5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4조(도정예비배심원 선정) ① <u>도지사는 충청북도에</u>500명 이내의 도정예비배심원을 위촉한다.</p> <p>제5조(사안별 도정배심위원단 구성) ① <u>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</u> <u>사안별로 도정배심위원단을</u> ② <u>도정배심위원단의 구성은 사안의 경중 등을</u>.....</p>

원 안	수 정 안
<p>제6조(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) ① 도정 배심원단 운영은 <u>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운영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도정배심원단 의견은 ……………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 <p>제7조(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)</p> <p>① 운영부서의 장은 ……………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에게 ……………</p> <p>② 위원회 및 최종 정책결정권자는 …………… <u>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6조(도정배심원단 운영방법) ① 도정 배심원단 운영은 <u>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도정배심원단의 의견결정은 …………… 정한다.</u></p> <p>제7조(도정배심원단 의견 반영)</p> <p>① 운영부서의 장은 …………… <u>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 결정권자에게 ……………</u></p> <p>② <u>당해 업무관련 위원회 및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…………… 이를 최대한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</u></p>